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8,500,000	22,455,000
일반회계		667,800,000	20,034,000
특별회계		80,700,000	2,421,000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55,800,000	1,674,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0,200,000	906,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600,000	768,000
	기타특별회계	24,900,000	747,000
	수질개선특별회계	5,774,000	173,2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18,000	69,54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087,000	32,6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870,000	86,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20,000	9,6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25,000	72,750
	치수사업특별회계	2,366,000	70,980
	기반시설특별회계	590,000	17,7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400,000	42,000
	주차장특별회계	5,750,000	172,5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26,64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